

[개인정보보호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전후 대비표]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3조(목적 외 이용 등의 관리 및 공개) ① 각 부점은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 기록하여 관리하고, 이를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각 부점은 제1항의 경우에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, 법적근거, 목적, 개인정보의 항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. <신 설>	제3조(목적 외 이용 등의 관리 및 공개) ① 각 부점은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 기록하여 관리하고, 이를 즉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(이하 “주무부서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주무부서는 제1항의 경우에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, 법적근거, 목적, 개인정보의 항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. 부 칙(4) 이 세칙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	· 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」 준수를 위한 내용 정비 · 공고 업무 일원화를 위한 내용 정비